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보건·의료조합에 경영공시 의무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2025. 4. 1. 공포, 2025. 10. 2. 시행)됨에 따라 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사항 및 통합공시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경영공시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안 제10조의4 신설)

- 1) 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사항을 조합 및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 명칭·주소·연락처 등 기본정보와 시·도지사의 감독사항·조치결과 및 사업보고서로 구체화함.
- 2) 보건·의료조합이 조합의 경영공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통합공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경영공시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제2호)

조합 등의 이사장 또는 청산인이 서류를 미비치하는 경우, 보건·의료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경영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보건·의료

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각각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5. 16. ~ 6.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 ① 법 제48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조합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건·의료조합 및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연혁, 임원 및 조합원 현황 등 기본정보
2. 시·도지사의 감독사항과 그 조치 결과
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사업보고서

②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조합은 법 제4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다.

별표 제2호에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조합등의 이사장 또는 청산인이 법 제44조(제64조 및 제7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8조제3항 제3의2호	50	100
카. 보건·의료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	법 제88조제3항	50	100

산인이 법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경영공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5호		
타. 보건·의료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8조제3항 제6호	50	100

부 칙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조의4(보건·의료조합의 경</u> <u>영공시) ① 법 제48조의2제1항</u> <u>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u> <u>는 보건·의료조합의 경영에 관</u> <u>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u> <u>호의 사항을 말한다.</u> <u>1. 보건·의료조합 및 조합이 개</u> <u>설한 의료기관의 명칭, 주소,</u> <u>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연혁,</u> <u>임원 및 조합원 현황 등 기본</u> <u>정보</u> <u>2. 시·도지사의 감독사항과 그</u> <u>조치 결과</u> <u>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업</u> <u>에 대한 사업보고서</u> <u>②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u> <u>에 따라 보건·의료조합은 법 제</u> <u>4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u> <u>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하는 인</u> <u>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u> <u>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4433